

연구윤리지침

심사평가연구실 연구기획부

전부개정 2021.12.29. 지침 제358호

일부개정 2024.11.08. 지침 제434호

제 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연구수행 등에서 필요한 연구윤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자 등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여 연구윤리 위반행위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주관부서”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의 「직제규정」(이하 “「직제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를 총괄하는 심사평가원의 소관부서를 말하며, “연구주관부서장”이란 연구주관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연구책임자”란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 중 연구를 총괄적으로 책임지는 연구자를 말한다.
3. “외부연구자”란 심사평가원의 임직원이 아닌 자로서 제7조의 공동연구등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연구수행”이란 모든 학술 활동을 포함하는 다음 각 목의 연구사업 또는

연구활동을 말한다.

가. “연구사업”: 심사평가원의 관계 법령상 소관 업무와 관련된 연구수행

나. “연구활동”: 심사평가원의 임직원 등이 수행하는 연구사업 이외의 연구수행

5. “연구윤리 위반행위”란 제8조에서 정하는 연구부정행위와 연구부적절행위, 그 밖에 관계 법령 또는 이 지침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말한다.

6. “제보자”란 심사평가원 임직원 등의 연구윤리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인지한 사실 또는 증거를 심사평가원에 신고(이하 “제보”라 한다)한 자를 말한다.

7. “피조사자”란 제보 등과 그에 따른 검증 과정에서 연구윤리 위반행위의 검증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검증 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8. “예비조사”란 연구윤리 위반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자료 수집 및 사실 확인을 하여, 제9호에 따른 본조사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9. “본조사”란 연구윤리 위반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10. “판정”이란 연구윤리 위반행위 조사결과를 심의·확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11. “검증”이란 이 지침에서 규정하는 “예비조사”, “본조사” 또는 “판정” 등을 말한다.

12. “제규정”이란 심사평가원의 「제규정관리규정」에 따른 제규정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한다.

1. 심사평가원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이하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운영규정」”라 한다)을 적용하는 연구사업 또는 연구활동 등

2. 제1호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연구사업 또는 연구활동(학술지 게재 또는 논문 작성 등 학술 연구활동, 학술대회 발표 등을 포함한다)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연구윤리 위반행위 방지 등 연구윤리 확보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 또는 규정 등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른다.

제5조(연구책임자 책무)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수행에 참여한 모든 연구자의 연구윤리 위반행위 및 연구 진실성과 연구예산, 자료수집, 결과보고 등 연구수행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연구책임자는 연구수행 및 연구성과 배분 등과 관련하여, 제8조 등에서 규정한 연구윤리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연구자의 책무) ① 연구자는 연구의 제안, 수행, 결과보고 및 발표 등 모든 연구 관련 행위를 정직하고 진실하게 수행하여 이 지침 등에서 정하는 연구윤리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가 연구보고서 결과를 논문 작성, 저작 활동 등에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구수행에 참여한 모든 연구자(이하 “참여연구자”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연구자는 연구수행 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령·제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연구대상자의 개인정보 자료의 비밀유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제7조(공동연구) ① 심사평가원 임직원과 외부연구자가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연구책임자는 연구수행에 앞서 각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연구 기여도, 저자표시 순서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② 심사평가원과 외부기관 간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등에 제1항을 준용한다. 이 때, 연구의 주관기관, 연구결과의 지식재산권 및 소유권 등에 대하여 상호 합의로 명확히 정하여야 한다.

제8조(연구부정 행위 및 연구부적절 행위) 연구과제의 제안 및 수행, 연구결과

의 보고 및 발표 등 연구수행과 관련한 연구부정행위 및 연구부절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부정행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위조: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나. 변조: 연구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다. 표절: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자기 것처럼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 또는 출처 표기를 했더라도 인용된 양과 질이 정당한 범위를 넘어 피인용저작물이 주(主)이고 인용 저작물이 종(從)이 되는 관계를 야기하는 행위

라. 부당한 저자 표시: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 등의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 등의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등의 행위

2. 연구부절적행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중복게재: 자신의 이전 연구물과 동일한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정당한 승인(허가) 또는 절차 없이 부적절하게 사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 각 행위로 구분

1) 자기표절: 자신이 이미 발표(게재)한 저작물의 일부를 적절하게 출처를 밝히지 않고 다시 활용하는 행위

2) 이중게재: 자신의 이전 저작물과 동일한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선행 저작물의 존재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다시 발표(게재)하는 행위

나. 비밀누설: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서 업무 관련 정보나 자료 등에

- 관한 비밀을 심사평가원의 허락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 다. 검증 방해 또는 제보자 가해: 본인 또는 타인의 연구윤리 위반행위의 의혹에 대한 검증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라. 용인 범위 초과: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 행한 연구 수행 또는 연구결과의 활용 등 행위
- 마. 허위 또는 과장 표시: 연구와 관련하여 학력, 경력, 자격, 연구업적 및 결과 등을 허위 또는 과장하여 표시하는 행위
- 바. 강요 등: 타인에게 제1호부터 제2호마목까지에서 규정한 연구윤리 위반 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제9조(연구윤리 위반행위 간주) ① 심사평가원의 임직원이 업무상 권한을 이용하거나, 심사평가원이 보유하고 있는 미공개 정보 등을 활용·제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연구윤리 위반행위로 간주한다.

1. 논문·저서를 작성·제출·집필·발간(이하 “논문 작성 등”이라 한다)
2. 심사평가원 소속이 아닌 자(연구책임자 등을 말한다)의 논문 작성 등에 저자 또는 공동저자 등으로 참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경우 연구윤리 위반행위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다만, 형식적 참여 등으로 잠탈(潛脫)하여 연구윤리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의 일환으로 논문 작성 등을 하는 경우
2. 심사평가원의 「교육운영세칙」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내위탁교육 또는 같은 세칙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국외위탁교육의 경우
3. 공개된 정보나 자료 등을 편집·가공 또는 분석하여 논문 작성 등을 하는 경우
4.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심사평가원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이하 “기관생명윤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은 경우

- 제10조(연구 및 저서발간 등 행위 사전신고)** ① 심사평가원의 임직원은 제9조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연구 및 저서발간 등 행위”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 및 저서발간 등 행위 사전신고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약속서를 연구주관부서장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이전에 행한 연구 및 저서발간 등 행위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제1항에 따라 연구 및 저서발간 등 행위를 연구주관부서장에게 미리 신고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 및 저서발간 등 행위 사전신고서에 소속 부서장의 서명(또는 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참여연구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 ③ 심사평가원 임직원이 퇴사 후 재직 당시 참여한 연구결과 및 업무를 활용하여 논문 및 저서발간 등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별지 제9호서식의 연구결과 활용 승인요청서를 연구주관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8.>
- ④ 퇴사한 임직원은 제3항에 따라 연구결과 활용 승인을 받은 후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8.>
1. 논문 및 저서 내에 심사평가원 재직 시절 연구임을 밝히는 사사표기를 하여야 한다.
 2. 소속에 심사평가원 기관명을 기재하되, 저자가 2개 이상의 기관에 소속된 경우, 심사평가원과 현 소속된 기관명을 병기하여야 한다. 다만, 학술지 투고 규정 등에 따라 소속 병기가 불가능한 경우 해당 사유를 별지 제9호서식 연구결과 활용 승인요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장 연구윤리심의위원회

제11조(연구윤리심의위원회 설치) 심사평가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연구자의 연구윤리 위반행위 해당 여부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12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6조제3항을 위반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관한 제보사항
2. 제8조 또는 제9조에서 규정하는 연구윤리 위반행위에 관한 제보사항
3. 제10조를 위반한, 연구 및 저서발간 등 행위에 관한 제보사항
4. 제31조를 위반한, 같은 조에 따른 일체의 권리 등의 임의적 사용허가·양도 등 행위에 관한 제보사항
5. 제23조제2항 등에 따른 승인 등
6. 연구윤리 관련 제도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항을 기관생명윤리위원회가 심의하여야 하는 경우, 위원회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위원장에게 해당 사항을 통보 하여야 한다. 이 때, 통보 이후에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의 절차에 따른다.

제1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4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때, 외부위원을 2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심사평가연구소장으로 하며, 위원은 제12조제1항 등에 따른 심의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장이 지명(지정 또는 위촉을 포함한다)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심사평가원의 1급 직원 또는 상근심사평가위원
2. 보건의료분야 연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관련분야 법률 전문가
4. 보건복지부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제1항제1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직제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관련 제규정과 지침 수립 등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위원회에 포함시켜야 한다.

④ 위원회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직제규정」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을 총괄 관리하는 담당 부의 장으로 한다.

제14조(위원의 제척·회피·기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 회의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심의 대상 연구에 관여하는 경우
2. 위원이 심의 대상 연구의 연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심의 대상 연구의 연구자의 대리인 등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관계 등으로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등의 사유로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위원회 회의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이 제2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 대한 제13조제2항의 지정 또는 위촉을 철회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이 제2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다.

⑤ 해당 제보자 등의 당사자는 제1항 등의 사유로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위원에 대하여 기피 신청할 수 있다. 이 때, 위원장

은 그 신청사유가 정당한 경우, 해당 위원에 대한 제13조제2항의 지정 또는 위촉을 철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에 대한 정당한 기피 신청 시에는 제1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다.

⑥ 위원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13조에 따른 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원을 보충 지정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사유 등 대면 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장이 판단하여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전원에게 안건을 송부하여야 하며, 미리 지정한 회신기간 내에 재적위원 과반수의 회신으로 심의하고, 회신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윤리심의 판정결과서에 기록하고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한다. 다만, 서면 심의 시에는 개별 회신위원의 기록과 서명을 취합하는 방법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에게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을 요구하거나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조사자는 해당 요구에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제16조(회의록) ①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는 때에는, 간사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의 종료(서면 회의의 경우 위원회의 의견 등 회신) 후 15일 이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회의록을 위원장이 확정하기 위하여, 간사는 해당 위원이

장기 부재하는 사유 등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의에 참석한(서면 회의의 경우 회신한) 모든 위원의 확인 및 서명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실무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18조 등에 따른 사실 확인 등 조사업무를 수행할 실무조사반(이하 “실무조사반”이라 한다)을 연구윤리 위반행위의 검증 등이 필요할 때마다 구성 및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무조사반은 연구주관부서장 및 심사평가원의 3급 이상 직원(부연구위원을 포함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 등 5명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주관부서장은 제8조제1호다목의 표절 행위에 대한 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

④ 제14조에서 규정한 제척·회피·기피 등은 이 조에 따른 실무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에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은 “실무조사반의 구성원”으로 본다.

제18조(실무조사반의 기능) ① 실무조사반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2조제8호에 따른 예비조사

2. 제2조제9호에 따른 본조사

3. 제23조 등 이 지침의 규정에 따른 예비조사 결과 또는 본조사 결과의 위원회 보고

② 실무조사반은 조사과정에서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 등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③ 실무조사반은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연구윤리 위반행위와 관련된 심사평가원의 임직원에게 대한 소속부서의 출입제한, 해당 연구자료의 압수·보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장 연구윤리 위반행위의 제보 및 권리보호

제19조(제보) ① 연구윤리 위반행위를 제보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윤리 위반행위 신고서 등에 따라 연구주관부서장에게 전화, 구술,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다. 이 때, 실명으로 제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 후문에도 불구하고 제보자가 익명으로 제보하는 경우, 연구윤리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20조(제보자 권리보호) ① 위원회와 실무조사반은 제19조에 따른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을 엄격히 관리하여야 하며, 제보자를 관계 법령 및 제규정 등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제보자가 연구윤리 위반행위의 신고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③ 제보자는 위원회와 실무조사반 등 담당자에게 연구윤리 위반행위 제보 이후에 진행되는 검증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와 실무조사반 등 담당자는 제보자의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1조(피조사자 권리보호) ① 위원회와 실무조사반은 연구윤리 위반행위의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피조사자가 제보에 대한 검증의 절차 및 일정 등을 요구할 경우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와 실무조사반은 피조사자의 연구윤리 위반행위 해당 여부가 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윤리심의 판정결과서에 따라 확정되기 전까지 그 결과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8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원장은 제26조 등에 따른 검증 결과 연구윤리 위반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된 경우, 해당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연구윤리 위반행위의 검증

제22조(검증원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 지침에 따라 연구윤리 위반행위의 검증을 개시한다.

1. 제보

2. 그 밖에 검증이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판단하는 경우(이하 “인지”라 한다)

② 이 지침에서 정하는 연구윤리 위반행위의 해당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위원회에 있다. 다만, 피조사자가 위원회 또는 실무조사반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고의로 훼손하였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그 입증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③ 위원회와 실무조사반은 제보자과 피조사자(이하 “피조사자 등”이라 한다)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 등을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④ 이 지침에서 정하는 연구윤리 위반행위의 해당 여부에 관한 검증은 제23조에 따른 예비조사, 제24조에 따른 본조사, 제26조에 따른 판정의 단계로 진행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증거자료에 대한 중대한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에는 실무조사반의 구성 이전에도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연구윤리 위반행위와 관련된 심사평가원의 임직원에게 대한 소속부서의 출입제한, 해당 연구자료의 압수·보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원장은 위원회와 실무조사반이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23조(예비조사) ① 제19조에 따라 제보를 접수받은 연구주관부서장은 이를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장은 제보 접수 또는 인지 일부터 15일 이내에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와 제17조에 따른 실무조사반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실무조사반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예비조사를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일부터 30일 이내에 예비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조사기간을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1. 제보내용의 사실 확인 및 연구윤리 위반행위 해당 여부
2. 제보내용의 본조사 실시 필요성 여부
3. 기타 검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③ 실무조사반은 예비조사 완료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라 예비조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예비조사 결과 피조사자가 연구윤리 위반행위 사실을 인정한 경우 또는 제보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등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본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제24조(본조사) ① 위원회는 제23조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예비조사 결과 본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고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실무조사반

이 본조사를 착수하게 하여야 하며, 실무조사반은 착수 일부터 30일 이내에 본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조사 기간을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② 실무조사반은 피조사자 등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기 전에 피조사자 등에게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피조사자 등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실무조사반은 본조사 완료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본조사 결과 보고서에 진술서, 제재조치 건의사항 등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연구 및 저서발간 등 행위 점검) ① 연구주관부서장은 제10조에 따른 연구 및 저서발간 등 행위 사전 신고 의무(이하 “사전 신고 의무”라 한다)를 위반한 사례가 발생한 경우 제8조 또는 제9조 등에서 규정한 연구윤리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연구주관부서장은 필요시, 사전 신고 의무 준수 여부를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해당 의무 위반 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제8조 또는 제9조 등에서 규정한 연구윤리 위반행위 해당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또는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제8조 또는 제9조 등에서 규정한 연구윤리 위반행위가 의심되거나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23조부터 제24조까지 등에 규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이 때, 연구주관부서장이 위원장에게 이를 보고하여, 위원장이 인지하는 것으로 해당 절차를 시작한다.

제26조(판정) ① 위원회는 제23조제3항 및 제4항 또는 제24조에 따른 조사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윤리심의 판정 결과서에 따라 연구윤리 위반행위 해당 여부의 판정을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판정 일부터 10일 이내에 피조사자 등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윤리심의 판정결과서에 따른 판정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3조에 따른 예비조사 착수 이후 제2항에 따른 판정의 통보까지 모든 검증 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위원회 승인을 거쳐 검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때, 피조사자 등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이의신청 및 재심의) ①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판정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제26조제2항에 따른 판정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별지 제7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심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심의 절차는 제23조, 제24조 또는 제26조를 준용한다. 이 때, 위원장이 인지하는 것으로 해당 절차를 시작한다.

제5장 판정 결과에 대한 조치

제28조(판정 결과에 대한 조치) ① 위원회는 제26조 등에 따른 판정 결과 연구윤리 위반행위가 확인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원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1. 연구 수행 중단 또는 변경 지시
2. 해당 연구보고서 또는 논문 등록 취소 요청
3. 자체 연구비, 용역비 등 연구에 소요된 비용 환수
4. 연구책임자 자격의 상당기간 제한 또는 심사평가원의 「인사규정」 등 제규정에 따른 징계 등

② 제1항에 따른 건의를 받은 원장은 관련 조치를 결정하고 관련자 등에게 해당 조치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연구윤리 위반행위 등을 한 자가 심사평가원 임직원인 경우 소속 부서장에게, 외부기관 소속 연구자인 경우 해당 기관장에게 관련 위반 사항 및 조치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검증 과정 중이라도, 지체 없이 제3항에 따른 소속부서장, 외부기관의 장 또는 유관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그 밖의 공권력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29조(이행 및 이행점검) ① 제28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해당 조치를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에 따른 조치의 이행 의무자(연구윤리 위반행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심의결과 조치 이행 보고서에 따라 시정내역을 작성하여 소속부서장의 확인 서명을 받아 연구주관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구주관부서장은 제2항에 따른 시정내역을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논문 등 저작물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30조(자료의 보관 및 공개) ① 이 지침에 따른 조사 관련 기록 및 자료 등은 연구주관부서가 심사평가원의 「기록물관리규정」 등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또는 연구주관부서장은 판정이 끝난 후 검증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제보자, 실무조사자, 증인, 참고인, 위원 등 조사 또는 판정에 참여한 자의 신원과 관련된 정보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31조(소유권 등) ① 연구수행 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 판권 등 일체의 권리(연구 관련 데이터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심사평가원에 속한다. 다만, 제7조에 따른 공동연구의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연구자는 제1항에 따른 심사평가원의 권리를 심사평가원의 허락 없이 임의로 사용하도록 하거나 타인 또는 타 기관에 양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참여한 외부위원 또는 관련 전문가, 참고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또는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3조(세부사항) 원장은 이 지침의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칙<지침 제358호, 2021.12.29.>

이 지침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침 제434호, 2024.11.8.>

이 지침은 2024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연구 및 저서발간 등 행위 사전신고서

신고자	성명	직번	소속	
연구 (논문·저서)명				
작성기간	20 ~ 20			
연구내용 (논문·저서내용)				
연구방법 (자료확보·활용)				
관련기관	(대학교, 연구기관)			
관련자료 (첨부물)				

상기와 같이 연구 및 저서발간 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참여연구자: (서명 또는 인)

확인자(소속부서장): (서명 또는 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주관부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확약서

성명:

직번:

소속:

상기 본인 _____는 학업수행 등의 목적으로 논문(또는 각종 보고서) 작성 및 저서 (공동)집필 등을 하는 경우, 심사평가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주관부서장 귀하

연구윤리 위반행위 신고서

제보자		성명			
		이메일(E-mail)		전화번호	
연구윤리 위반행위 연구	연구 (논문·저서)명				
	연구 자	소속	성명		
제보 내용			* 연구윤리 위반행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관련자료(첨부물)					

상기와 같이 연구윤리 위반행위를 제보합니다

년 월 일

제보자 : (서명 또는 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주관부서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본인은 연구윤리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본인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동의인: (서명 또는 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연구윤리지침」에 따른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연구윤리 위반행위 검증 업무

【수집하고자 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E-mail)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라 불가피하게 검증 업무가 일부 지연되는 등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된 개인정보는 연구윤리 위반행위 검증 활동 종료 후 즉시 파기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며, 연구윤리 심의위원회 연구윤리 위반행위 검증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이를 처리하지 않습니다.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 내에서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별지 제4호서식]

예비조사 결과보고서

연구윤리 위반행위 연구	연구 (논문·저서)명			
	피조사자 (연구자)			
	연구기간		연구비	
조사기간				
제보 내용				
연구윤리 위반행위 조사(검토) 내역				
관련 증거				
연구윤리 위반행위 판단 근거				
본조사 실시 여부		실시() 미실시()		

[별지 제5호서식]

본조사 결과보고서

연구윤리 위반행위 연구	연구 (논문·저서)명			
	피조사자 (연구자)			
	연구기간		연구비	
조사기간				
실무조사반 명단				
제보 내용				
연구의 피조사자 역할과 위반행위 사실여부				
관련 증거				
이의(변론) 내용 및 처리결과				

※ 진술서, 제재조치 건의사항 등을 첨부합니다.

[별지 제6호서식]

연구윤리심의 판정결과서

연구윤리 위반행위 연구	연구 (논문·저서)명				
	연 구 자	성 명			연구기간
		소 속			
연락처		• 주소 및 이메일(E-mail) : • 전화번호 :			
제보 내용					
판정 결과					

연구윤리심의위원회 위원 확인

위원명	서명	위원명	서명	위원명	서명

연구윤리심의위원회 위원장 확인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7호서식]

이의신청서

이의신청자					
이메일 및 전화번호		• 이메일(E-mail) : • 전화번호 :			
연구윤리 위반행위 연구	연구 (논문·저서)명				
	연구자	소속		성명	
	판정 문서번호				
이의신청 사유					
관련자료(첨부물)					

판정결과에 대하여 상기와 같이 이의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윤리심의위원회 귀중

심의결과 조치이행 보고서

연구윤리 위반행위자	성명		직번		소속	
연구 (논문·저서)명						
연구 (논문·저서)내용						
점검·심의 결과	결과					
	내용					
이행내용 (중단, 변경 등)						
관련자료 (첨부물)						

상기와 같이 점검·심의 결과 조치상황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연구윤리 위반행위자: (서명 또는 인)
확인자(소속부서장): (서명 또는 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주관부서장 귀하

연구결과 활용 승인 요청서

신청인	성명	
	소속기관	
	직위	
	연락처(이메일)	
활용 연구	연구제목	
	연구기간	
	연구책임자	
활용 유형	<input type="checkbox"/> 학술지 게재 (학술지 이름, 투고 시기) <input type="checkbox"/> 학회 발표 (학회 명, 발표 시기) <input type="checkbox"/> 기타 (언론 기고 등)	
활용 내용	<input type="checkbox"/> 활용목적 <input type="checkbox"/> 활용내용 - (예시) 심사평가원이 수행한 000(연구제목 등) 결과를 0000(활용 연구내용)에 활용하였음. <input type="checkbox"/> 연구(논문 등) 주요내용 - 연구제목 - 연구내용 <input type="checkbox"/> 기타	
사사표기	<input type="checkbox"/> (예시) 이 000(논문)보고서는 0000년도 0월~0월 기간 동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행한 0000(연구제목) 연구 결과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공식적인 견해와는 다를 수 있다.	
기관명 중복 병기 미이행 사유	<input type="checkbox"/> (예시) 00학술지 투고 규정 상 소속기관명 중복 기재 불가 ※ 관련 증빙자료 첨부	

연구주관부서장 :

(서명 또는 인)